

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

- 산업자원부 -

1.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

○ 산업자원부는 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천연가스 도입원료비를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시 요금에 자동반영되도록 하는 「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」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○ 이 방안에 따르면,

- 도시가스요금을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에 연동하여 분기단위로 조정하되,
- 빈번한 요금조정에 따른 소비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제도입원료비가 현행요금상의 원료비 대비 $\pm 3\%$ 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, $\pm 3\%$ 이내일 경우에는 다음분기에도 현행요금상의 원료비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.
- 한편, 연동제 시행시 최초로 적용되는 원료비는 최근의 실제 도입 원료비를 기준[222,32원/㎡(14.5\$/B, 1400원/\$ 기준)으로 하였다.

○ 이와 같이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

- 지금까지의 도시가스요금은 국제가격 및 환율이 변

동되어 국내가격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때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, 누적된 조정요인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, 석유제품등 상대연료와의 가격왜곡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왔기 때문이며

-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도입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.

○ 그러나, 동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제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기간 도시가스요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

2. 천연가스 공급가격 조정

○ 한편, 산업자원부는 원료비연동제 시행과 동시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비용(노무비, 감가상각비등 경비, 적정마진)을 재산정하고, 현행가격 체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조정하였다.

○ 천연가스 공급가격조정의 주요 내용은

-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공급비용을 적용하던 방식을 수요패턴(도시가스용: 동고하저, 발전용: 연중균등)에 의한 원가발생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원가배분체계를 개선하였으며
- 현행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상으로는 적용이 곤란한 열병합 발전 및 집단에너지사업용 요금을 신설하고, 수요패턴이 비슷한 주택난방과 업무용난방을 통합하는 등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을 조정하였다.
- 또한 지난해 환율급등에 따라 수입원가가 급상승하였으나,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가스 공급사가 부담하게 된 수입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였다.


○ 급변 공급가격조정으로 도시가스용 평균 도매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나, 용도별요금은 다소 조정되어

- 주택·난방용은 331.89원/㎡에서 330.08원/㎡으로 0.5%,
- 영업용은 324.28원/㎡에서 일반용으로 명칭 변경되어 282.28원/㎡으로 13%,
- 산업용은 272.06원/㎡에서 264.92원/㎡으로 2.6%로 각각 인하되고,
- 냉방용은 95.8원/㎡ 요금조정 이후 동일가격을 유지하였으나, 특수세 인상 등 원료비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125.35원/㎡에서 161.59원/㎡으로 28.9%로 인상되며
- 또한, 신설된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은 동절기 297.50원/㎡, 하절기 235.55원/㎡, 기타월 264.92원/㎡으로 계절간 차등요금이 적용된다.

○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도 조정될 전망이며,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

- 취사용의 경우 월 12㎡ 사용가구 기준 현행 월 5,822원에서 5,799원으로 23원 인하되며,

- 난방용의 경우 서울지역 월 98㎡ 사용가구(25평) 기준 월 41,273원에서 41,078원으로 195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발전용의 경우 원가배분체계 개선에 따라 공급비용이 현행 59.40원/㎡에서 44.08원/㎡으로 15.32원/㎡인 하된다. 

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방안

		시행방안
도매요금	○조정범위	○조정시점 직전 3개월 실적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 대비 ±3% 초과 변동시 원료비를 조정 - ±3%이내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음
	○조정주기 및 조정시기	○조정주기 : 분기 단위(최초 시행시는 2개월) ○조정시기 : 조정월 1일기준
	○원료비손익 정산	○정산주기 : 1년단위 - 도입원료비 적용시차, 계절간 수요격차 등에 따라 발생한 원료비손익은 사후 정산 - 정산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, 전년도 4/4분기에서 당년도 3/4분기까지의 손익을 차기년도 원료비에 가감 *원료비 손익정산은 공인회계기관이 검증
	○비상시의 연동제 유보	○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등으로 LNG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연동제 일시 유보 가능 - 연동제 일시 유보로 인하여 LNG 도매사업자에게 손익이 발생할 경우 사후 가격에 반영하여 보전함을 원칙
	○제도보완 사항	○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- 원료비 변동에 의한 요금조정시 자동승인 조항 신설
소매요금	○조정시기	○도매가격 조정시 동시 조정
	○제도보완 사항	○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*도매요금 변동시 자동 승인조항 신설

천연가스 공급가격 조정내용

□ 천연가스 도매요금

● 도시가스용

(단위: 원/㎡, 부가세 별도)

현행		조정		증감(%)	비고	
주 택 용	331.89	주택·난방용	330.08	△1.81(△0.5)	용도통합	
일 반 용	영업용	324.28	일반용	282.28	△42(△13)	
	난방용	319.77	-	-	-	
	냉방용	125.35	냉방용	161.59	36.24(28.9)	
산 업 용	272.06	산업용	264.92	△7.14(△2.6)		
-	-	열병합 및 집단 에너지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절기 297.50 • 하절기 235.55 • 기타월 264.92 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~3, 12월 • 5~8월 • 4, 9~11월 	
평 균	313.96	평균	313.96	-		

● 발전용

(단위: 원/㎡, 부가세 별도)

	현행	조정	증감(%)	비고
• 동절기	원료비 + 65.61	원료비 + 59.45	△6.16	• 1~3, 12월
• 하절기	원료비 + 47.76	원료비 + 28.71	△19.05	• 5~8월
• 기타월	원료비 + 55.35	원료비 + 44.08	△11.27	• 4, 9~11월
평균	원료비 + 59.40	원료비 + 44.08	△15.32	

주) 원료비는 전월 실적치에 연동(매월 변동)

□ 도시가스 소비자요금(서울시기준 추정)

(단위: 원/㎡, 부가세 별도)

현행		조정(추정)		증감(%)	비고	
주 택 용	취 사	441.13	취 사	439.32	△1.81(△0.4)	
	난 방	382.87	주택·난방용	381.06	△1.81(△0.5)	용도통합
			업무용난방	391.93	10.31(2.7)	
일 반 용	영업용	429.75	일반용	387.75	△42.00(△9.8)	
	난방용	381.62	-	-	-	주택·난방용으로 통합
	냉방용	165.97	냉방용	202.21	36.24(21.8)	
산 업 용	294.43	산업용	287.29	△7.14(△2.4)		
-	-	열병합 및 집단 에너지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절기 329.67 하절기 257.92 기타월 287.29 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~3, 12월 • 5~8월 • 4, 9~11월 	
평 균	372.34	평균	372.34			